

第243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9月26日(金)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견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 대표발의)
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1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1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1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희욱 의원 발의)
1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1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
1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1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
2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
2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22.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3. 政黨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4. 政黨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5.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6.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
27.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8.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9.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30.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발의)
31.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1. 간사(朴柱宣·千正培)선임의견	4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정균환·이재오·박종우·이강두·정우택 의원 외 34인 발의)	4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섭·김태홍·손희정·조정무·고진부·김홍신·김방립·김성순·최영희·배기선·유재건·민봉기·이재정·이훈평·윤여준·홍준표·배기운·김민석·이종걸·이호웅 의원 발의)	4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23인 발의)	4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 대표발의)(장성원·이훈평·정장선·김홍신·유재규·김효석 의원 외 25인 발의)	4
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김근태·김용학·김일윤·김정숙·김홍신·김희선·박명환·박창달·신기남·신현태·안상수·안영근·오세훈·원유철·원희룡·윤경식·윤여준·이원형·이호웅·정병국·한화갑·현경대 의원 발의)	4
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심재권·남경필·고진부·김태홍·서상섭·이성현·신기남·김부겸·김용학·박진·이미경·김원웅·권기술·이호웅·김성순·김문수·박인상·원희룡·최용규·김명섭·송영길 의원 발의)	4
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용규·임종석·이상수·정세균·임채정·신기남·김태홍·천정배·송영길·조한천·김성호·이재정·유재건·김택기·박인상·이미경·김성순·곽치영·허운나·최선영·조순형·조성준·김희선·김원기·이강래·정동영 의원 발의)	4
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이강래·이낙연·이종걸·장재식·정동영·함승희·정동채·신기남·문희상·김효석·배기운·김태홍·이호웅·설송웅·김원웅·김영환·임종석·정세균·송영길·김성호·원유철·천정배·신계륜 의원 발의)	5
1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22인 발의)	5
1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홍신·서상섭·신기남·김방립·설훈·박양수·정장선·정범구·김운용·정동영·김충조·김덕규·김영진·김성순·김근태·김홍일·김영환·강운태·임종석·김원기·조배숙·김희선·김화중·천용택·고진부·장성원·최용규·김택기·김태홍 의원 발의)	5
1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강창성·윤여준·최병렬·맹형규·이연숙·김병호·이재오·김정숙·서병수·이원창·하순봉·조용규·박원홍·윤한도·신현태·정창화·황승민·현경대·윤영탁·황우여·서상섭·엄호성·박종희·이경재·권기술·김경천·장성원·박명환·원희룡·양정규·신영국 의원 발의)	5
1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희욱 의원 발의)(조희욱 의원 외 14인 발의)	5
1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최선영·조한천·이희규·박병석·오영식·이미경·유용태·홍재형·김경천·김충조·김희선·유재규·김성순·김옥두·장태완·최명현·이종걸·고진부·이훈평·장성원·심재권 의원 발의)	5
1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정의화·김원웅·김근태·최영희·유재건·김옥두·김운용·이미경·박양수·신기남·김희선·김원기·김경천·김성호·남궁석·이창복·유재규·김태홍·최용규 의원 발의)	5
1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김용균·이원형·김덕규·김성조·김성호·김옥두·김종하·김태식·박상규·박상천·박인상·박주선·배기운·송석찬·심규철·이강래·이낙연·이상배·이승철·이우재·이재창·장성원·조용규·이협·천용택·최명현·홍재형 의원 외 30인 발의)	5
1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삼재·권기술·김형오·엄호성·유시민·윤경식·이경재·이윤성·장성원·하순봉 의원 발의)	5

1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채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오경훈 · 송광호 · 이윤성 · 하순봉 · 서상섭 · 박진 의원 발의) 5
1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심규철 · 엄호성 · 이주영 · 임인배 · 권영세 · 오경훈 · 전용학 · 권기술 · 이인제 · 백승홍 · 박시균 · 박종근 · 정갑윤 · 오세훈 · 이인기 의원 발의) 5
2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권태망 · 오경훈 · 강창희 · 정문화 · 현승일 · 남경필 · 유재규 · 박명환 · 권기술 · 김학송 · 이경재 · 박혁규 · 김형오 · 윤한도 의원 발의) 5
2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전갑길 · 이희규 · 정철기 · 박상규 · 이정일 · 김운용 · 배기운 · 조배숙 · 이낙연 · 이강래 · 최선영 · 신기남 · 이훈평 · 송석찬 · 강숙자 의원 외 1인 발의) 5
22.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김성순 · 김성호 · 김용학 · 김원웅 · 김태홍 · 문석호 · 박용호 · 박인상 · 박종희 · 송영길 · 신현태 · 안영근 · 원유철 · 유재건 · 이종걸 · 이창복 · 임종석 · 장성원 · 장영달 · 장정언 · 정동영 · 정범구 · 정철기 · 천정배 · 최용규 의원 발의) 5
23. 政黨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 · 이재정 · 김홍신 · 김희선 · 김태홍 · 김영춘 · 이창복 · 박상희 · 송석찬 · 윤철상 · 배기선 · 김택기 · 정동영 · 서상섭 · 이미경 · 조정무 · 조재환 · 김근태 · 김덕룡 · 조희욱 · 한화갑 · 송광호 · 유재규 · 박명환 · 김성호 · 심재권 · 김경천 · 임종석 · 이호웅 · 정범구 · 장영달 · 송영길 · 정대철 · 이정일 · 최영희 · 강현욱 · 유재건 · 전갑길 · 김명섭 · 고진부 · 설송웅 · 박양수 · 강운태 · 신계륜 · 조배숙 · 김화중 · 박주선 · 남궁석 · 전용학 · 박병석 · 추미애 · 조한천 · 김덕규 · 최용규 · 설훈 · 홍재형 · 김성순 · 정장선 · 박인상 · 천정배 · 이훈평 · 조성준 · 이희규 · 장정언 · 궤치영 · 원유철 · 함승희 · 김윤식 · 강성구 · 김기재 · 김운용 · 김경재 · 박용호 · 최선영 · 허운나 · 신기남 · 김효석 · 배기운 · 장태완 · 최명현 · 김원기 · 정세균 · 박병운 · 김덕배 · 김영진 · 문희상 · 송훈석 · 조순형 · 송영진 · 최재승 · 김영배 · 이용삼 · 천용택 · 박상규 · 이윤수 · 김충조 의원 발의) 5
24. 政黨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강창성 · 윤여준 · 최병렬 · 맹형규 · 이연숙 · 김병호 · 이재오 · 김정숙 · 서병수 · 이원창 · 하순봉 · 조용규 · 박원홍 · 윤한도 · 신현태 · 정창화 · 황승민 · 현경대 · 윤영탁 · 황우여 · 서상섭 · 엄호성 · 박종희 · 이경재 · 권기술 · 김경천 · 장성원 · 박명환 · 원희룡 · 양정규 · 신영국 의원 발의) 6
25.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전용학 · 박종희 · 오세훈 · 이경재 · 황우여 · 권영세 · 이재오 · 윤경식 · 전채희 · 원희룡 · 박근혜 · 남경필 · 안상수 · 조정무 · 윤여준 · 김홍신 · 이근진 · 강성구 · 안경률 · 서상섭 · 박진 · 하순봉 의원 발의) 6
26.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박승국 · 이인기 · 이재오 · 박혁규 · 박종희 · 이방호 · 손희정 · 심규철 · 이상배 · 권오을 · 손태인 · 박창달 · 윤두환 · 정병국 · 이연숙 · 김광원 · 백승홍 · 정인봉 · 안경률 · 박세환 · 황우여 · 윤영탁 의원 발의) 6
27.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 · 강재섭 · 고흥길 · 권기술 · 권오을 · 김기춘 · 김정숙 · 박승국 · 안상수 · 오세훈 · 윤경식 · 이주영 · 전채희 · 정문화 · 정병국 · 정형근 · 조정무 · 최연희 · 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6
28.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김성순 · 김성호 · 김용학 · 김원웅 · 김태홍 · 문석호 · 박용호 · 박인상 · 박종희 · 송영길 · 신현태 · 안영근 · 원유철 · 유재건 · 이종걸 · 이창복 · 임종석 · 장성원 · 장영달 · 장정언 · 정동영 · 정범구 · 정철기 · 천정배 · 최용규 의원 발의) 6
29.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김경재 · 김근태 · 김상현 · 김성

호·김원기·김원웅·김태홍·김희선·송영길·심재권·유재건·이강래·이미경·이상수·이종
 결·이재정·이호웅·임종석·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함승
 희·허은나 의원 발의) 6

30.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발의)(박승국 의원 외 45인 발의) 6

31.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전용학·박종희·오세훈·이경
 재·황우여·권영세·이재오·윤경식·전재희·원희룡·박근혜·남경필·안상수·조정무·윤여
 준·김홍신·이근진·강성구·안경률·오경훈·송광호·권오을·하순봉·서상섭·박진 의원 발
 의) 6

(11시50분 개의)

건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睦堯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모두 바쁘신 입장에 있으신 것 같아서 의결을
 할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은 의결정족수가 달했
 을 때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국회(정기회)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朴柱宣·千正培)선임의견

(11시52분)

○委員長 睦堯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견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민주당에 몸 담으셨던 위원들 가운데 몇 분
 이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속정당 의원 수에 변동이 있고 위치
 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
 도 민주당과 통합신당 위원들의 사·보임이 있었
 습니다.

우선 새로 오신 분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간사선임의견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聖順 위원님 인사해 주시길요.

○金聖順 委員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
 습니다.

○委員長 睦堯相 정치개혁특위에 민주당에서는
 朴柱宣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을 하셨다고 통보가
 왔고 통합신당 위원들 가운데는 千正培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학
 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정균환·이재오·박
 중우·이강두·정우택 의원 외 34인 발의)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
 명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섭·김태홍·손희
 정·조정무·고진부·김홍신·김방림·김성순·
 최영희·배기선·유재건·민봉기·이재정·이
 훈평·윤여준·홍준표·배기운·김민석·이종
 결·이호웅 의원 발의)

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
 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23인 발의)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장성
 원 의원 대표발의)(장성원·이훈평·정장선·김
 홍신·유재규·김효석 의원 외 25인 발의)

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남경
 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김근태·김용학·
 김일윤·김정숙·김홍신·김희선·박명환·박창
 달·신기남·신현태·안상수·안영근·오세훈·
 원유철·원희룡·윤경식·윤여준·이원형·이호
 웅·정병국·한화갑·현경대 의원 발의)

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홍
 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심재권·남경필·고
 진부·김태홍·서상섭·이성현·신기남·김부겸·
 김용학·박진·이미경·김원웅·권기술·이호웅·
 김성순·김문수·박인상·원희룡·최용규·김명
 섭·송영길 의원 발의)

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종
 결 의원 대표발의)(이종결·최용규·임종석·
 이상수·정세균·임채정·신기남·김태홍·천정
 배·송영길·조한천·김성호·이재정·유재건·김
 택기·박인상·이미경·김성순·곽치영·허은나·
 최선영·조순형·조성준·김희선·김원기·이강
 래·정동영 의원 발의)

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강

래 의원 대표발의)(이강래·이낙연·이종걸·장재식·정동영·함승희·정동채·신기남·문희상·김효석·배기운·김태홍·이호웅·설송웅·김원웅·김영환·임종석·정세균·송영길·김성호·원유철·천정배·신계륜 의원 발의)

1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22인 발의)

1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홍신·서상섭·신기남·김방림·설훈·박양수·정장선·정범구·김운용·정동영·김충조·김덕규·김영진·김성순·김근태·김홍일·김영환·강운태·임종석·김원기·조배숙·김희선·김화중·천용택·고진부·장성원·최용규·김택기·김태홍 의원 발의)

1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강창성·윤여준·최병렬·맹형규·이연숙·김병호·이재오·김정숙·서병수·이원창·하순봉·조웅규·박원홍·윤한도·신현태·정창화·황승민·현경대·윤영탁·황우여·서상섭·엄호성·박종희·이경제·권기술·김경천·장성원·박명환·원희룡·양정규·신영국 의원 발의)

1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희욱 의원 발의)(조희욱 의원 외 14인 발의)

14.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최선영·조한천·이희규·박병석·오영식·이미경·유용태·홍재형·김경천·김충조·김희선·유재규·김성순·김옥두·장태완·최명헌·이종걸·고진부·이훈평·장성원·심재권 의원 발의)

1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정의화·김원웅·김근태·최영희·유재건·김옥두·김운용·이미경·박양수·신기남·김희선·김원기·김경천·김성호·남궁석·이창복·유재규·김태홍·최용규 의원 발의)

16.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김용균·이원형·김덕규·김성조·김성호·김옥두·김종하·김태식·박상규·박상천·박인상·박주선·배기운·송석찬·심규철·이강래·이낙연·이상배·이승철·이우재·이재창·장성원·조웅규·이협·천

용택·최명헌·홍재형 의원 외 30인 발의)

17.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삼재·권기술·김형오·엄호성·유시민·윤경식·이경제·이윤성·장성원·하순봉 의원 발의)

18.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전용학·박종희·오세훈·이경제·황우여·권영세·이재오·윤경식·전재희·원희룡·박근혜·남경필·안상수·조정무·윤여준·김홍신·이근진·강성구·안경률·오경훈·송광호·이윤성·하순봉·서상섭·박진 의원 발의)

19.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심규철·엄호성·이주영·임인배·권영세·오경훈·전용학·권기술·이인제·백승홍·박시균·박종근·정갑윤·오세훈·이인기 의원 발의)

20.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권태망·오경훈·강창희·정문화·현승일·남경필·유재규·박명환·권기술·김학송·이경제·박혁규·김형오·윤한도 의원 발의)

2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전갑길·이희규·정철기·박상규·이정일·김운용·배기운·조배숙·이낙연·이강래·최선영·신기남·이훈평·송석찬·강숙자 의원 외 1인 발의)

22.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성순·김성호·김용학·김원웅·김태홍·문석호·박용호·박인상·박종희·송영길·신현태·안영근·원유철·유재건·이종걸·이창복·임종석·장성원·장영달·장정언·정동영·정범구·정철기·천정배·최용규 의원 발의)

23. 政黨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이재정·김홍신·김희선·김태홍·김영춘·이창복·박상희·송석찬·윤철상·배기선·김택기·정동영·서상섭·이미경·조정무·조재환·김근태·김덕룡·조희욱·한화갑·송광호·유재규·박명환·김성호·심재권·김경천·임종석·이호웅·정범구·장영달·송영길·정대철·이정일·최영희·강현욱·유재건·전갑길·김명섭·고진부·설송웅·박양수·강운태·신계륜·조배숙·김화중·박주선·남궁석·전용학·박병석·추미애·조한천·

김덕규·최용규·설훈·홍재형·김성순·정장선·박인상·천정배·이훈평·조성준·이희규·장정언·곽치영·원유철·함승희·김윤식·강성구·김기재·김운용·김경재·박용호·최선영·허운나·신기남·김효석·배기운·장태완·최명현·김원기·정세균·박병윤·김덕배·김영진·문희상·송훈석·조순형·송영진·최재승·김영배·이용삼·천용택·박상규·이윤수·김충조 의원 발의)

24. 政黨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강창성·윤여준·최병렬·맹형규·이연숙·김병호·이재오·김정숙·서병수·이원창·하순봉·조용규·박원홍·윤한도·신현태·정창화·황승민·현경대·윤영탁·황우여·서상섭·엄호성·박종희·이경재·권기술·김경천·장성원·박명환·원희룡·양정규·신영국 의원 발의)

25.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전용학·박종희·오세훈·이경재·황우여·권영세·이재오·윤경식·전재희·원희룡·박근혜·남경필·안상수·조정무·윤여준·김홍신·이근진·강성구·안경률·서상섭·박진·하순봉 의원 발의)

26.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박승국·이인기·이재오·박혁규·박종희·이방호·손희정·심규철·이상배·권오을·손태인·박창달·윤두환·정병국·이연숙·김광원·백승홍·정인봉·안경률·박세환·황우여·윤영탁 의원 발의)

27.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강재섭·고홍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영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28.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성순·김성호·김용학·김원웅·김태홍·문석호·박용호·박인상·박종희·송영길·신현태·안영근·원유철·유재건·이종걸·이창복·임종석·장성원·장영달·장정언·정동영·정범구·정철기·천정배·최용규 의원 발의)

29.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김경재·김근태·김상현·김성호·김원기·김원웅·김태홍·김희선·송

영길·심재권·유재건·이강래·이미경·이상수·이종걸·이재정·이호웅·임종석·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함승희·허운나 의원 발의)

30.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발의)(박승국 의원 외 45인 발의)

31.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전용학·박종희·오세훈·이경재·황우여·권영세·이재오·윤경식·전재희·원희룡·박근혜·남경필·안상수·조정무·윤여준·김홍신·이근진·강성구·안경률·오경훈·송광호·권오을·하순봉·서상섭·박진 의원 발의)

(11시54분)

○委員長 陸堯相 그러면 가결을 뒤로 미루고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까지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등 3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鄭範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2003년 7월 2일 金容鈞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은 도시형 선거구와 농촌형 선거구의 인구기준을 달리하고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李海鳳 의원이 2001년 8월 16일 대표발의한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1회 1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로 기부 또는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고, 2003년 4월 4일 朴承國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02월 2월 26일 鄭長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중앙당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위원회는 25건의 정치관계법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각 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 대비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陸堯相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는 선거관련법 개정안 그리고 정당법·정치자금법 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들이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3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집중적으로 심층 있게 심의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위원회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결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6개월로 규정해 놓은 것은 다른 공직자의 사퇴시한인 60일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헌법위반이라는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 내려야 될 급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퇴시한도 거기에 맞추어서 6개월로 규정해 놓았던 것인데 다른 공직자 사퇴시한인 60일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몇 개월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균일하게 규정을 마련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마련한 개정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사전선거운동 규제 시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현명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적어도 우리 정개특위에서는 각 당의 당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짜에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롭게 자주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각 당의 당론을 집약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낼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容鈞 委員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표를 6개월 전에 내라고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반된 것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이라는 추상적인 조항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97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 대 1로 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가 4년 후인 2001년에는 3 대 1로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는 조령모개 식의 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6개월 전 사표를 요구하는 선거법 자체는 자치단체장이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6개월 간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사표를 내고 출마하게 될 때 선거의 공정 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조항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평등 원칙을 운운하면서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정개특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이 어떻게 상충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분석한 후에 태도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陸堯相 좋습니다.

의견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의

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결부터 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각종 법률 개정안을 모두 관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서 민주당과 통합신당주비위원회 간사를 다시 선임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千正培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통합신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간사 내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민주당에서 간사로 朴柱宣 위원님을 내정해서 통보해 왔으니까 민주당 쪽의 간사로 朴柱宣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위원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정개특위의 위원 변동이 많이 생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원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처리해야 될 안건은 산적해 있고 해서 다시 모여서 의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앞으로 내정되어서 통보되어 올 통합신당의 간사님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 이렇게 네 사람에게 소위 구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현재 결정에 따라서 각 당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각 당에서……

○**金學元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정당에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저 혼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할 때 종래에 있던 소위원대로 저는 그냥 책정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陸堯相** 나중에 의견 말씀을 좀 주시지

요.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陸堯相** 어제 현재 결정에 따라서 지자체장들의 사퇴 시한을 몇 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옳겠는가가 결론나면 관계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각 당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각 당에서 지자체장들의 사퇴 시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공직자의 사퇴 시한 2개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아니면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자체장들의 사퇴 시한과 균일하게 통일시켜서 조정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각 당에 촉구 공문을 보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어제 현재 결정에 따른 각 당의 의견을 이달 말까지 보내주시시오 이렇게 촉구공문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더 주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鄭義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陸堯相** 鄭義和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義和 委員** 제가 오늘 여기에 앉고 보니까 처음 이 특위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陸堯相**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으로 잘못 알았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全在姬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全在姬 委員** 국정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겹쳐서 아마 정개특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굉장히 시기가 급박합니다. 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처리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 각 당 간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또 각 당 간사는 당내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개특위가 일정 내에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촉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면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때에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陸堯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 국정감사가 10월 10일이면 대체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 10일 이후 현행법대로 따지면 사전 선거운동 규제 시한인 10월 15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을 대체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매일매일 회의를 거듭하더라도 빨리빨리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7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재조정 등에 대해서 각 당의 당론을 확정해서 보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결해서 공문까지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식으로 당론을 보내 주신 정당은 자유연합뿐입니다.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서 간접적으로 의견 말씀을 주신 바가 있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공식 문서로써 보내온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통합신당 쪽에서도 아직까지 전연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한나라당에서 의견이 온 것이 있는데 ‘현행 의원정수 273명 유지, 소선거구제 유지’ 그렇게만 왔어요. 아주 간략하게 온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당론을 정해서 보내 주십시오 하는 재촉구 공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揆澤 委員 한나라당에서 제출된 안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 장짜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당 관계자 위원장님을 뵈었어요. 그랬더니 당에서는 안을 내되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의 위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하기 때문에 한 장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陸堯相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全甲吉 위원님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은 세 명이시고요, 국회의원 아닌 분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아닌 분은 언론에 하나, 법조에 하나, 학계에 하나,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 하나,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현재 崔鉛熙 위원하고 朴柱宣 위원하고 저하고 셋인데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선거구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국회의원수가 확정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와의 비율이 확정되어야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결정이 되어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사전에 그와 같은 준비작업만 하면서 두 달에 한 번씩, 빠르면 한 달 반에 한 번씩 회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陸堯相 잘 알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저는 오늘 위원회에 처음 보임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 가지고 이런 발언하는 것은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년도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선거구 획정에 관여한 위원님이 한나라당의 崔鉛熙 위원하고 민주당의 朴柱宣, 또 자민련의 金學元 위원님 세 분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다 농촌지역에 선거구를 가지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선거구를 가진 사람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적어도 어느 당이 되었든 간에 한 분 정도는 들어 있어야, 왜냐하면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듯이 인구비례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도농 간의 특수성 감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원 세 분이 모두 농촌지역 의원이라면 많은 유권자를 가진 도시지역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할 기회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도 좀 의아스럽고 지금이라도 한 분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陸堯相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의결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3개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각 당에서 한 분씩

원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에다가 추천을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해서 그 당에서 추천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에서 건의나 의견말씀은 전달할 수 있어도……

○**咸承熙 委員** 다른 두 당에서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저희 당에서라도 제가 의견을 개진 해서 도시 출신 의원으로 사·보임하도록……

○**委員長 睦堯相** 그것은 咸承熙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새 신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당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한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한 분을 더한다고 그러면 명수가 8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때 선출되는 의원을 도시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주당 측에서 사·보임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주당 자체 사정의 문제이니까……

○**委員長 睦堯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오.’ 하고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제가 국회의장님께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결국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통해서 각 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해서 이것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제안설명서】

<공선법>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김학원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때마다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과열과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의 조성은 물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거공영제의 전면 실시를 통하여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막고 후보자들의 정치적 평등 및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아울러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성을 억제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정치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김명섭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로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장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부재자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투표소가 2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경우가 있어 투표를 포기한 신체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여 그들이 선거운동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는 바,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의 거소투표를 확대하고, 장애인등록을 한 신체장애인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서 등을 발송하도록 하며, 정당·후보자 등의 연설회, 공공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및 단체의 후보자연설회에 있어서 수화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한 신고공보 등의 작성비용, 수화통역 및 자막방영 비용 등은 후보자가 기탁금의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며, 투표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된 1층에 설치하고,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의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도록 하며, 30인 이상의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장애인시설 등의

장은 반드시 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정범구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15조제1항은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선거인명부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38조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거주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직원,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 및 해외유학생 등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해외체류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해외에서 선거하기를 원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체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장성원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동시선거를 농번기인 6월 중에 실시함에 따라 농번기에 농민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인력 부족현상으로 적기에 파종 및 농산물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사일에 바빠서 선거에 무관심하게 되어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있는 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4월 중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남경필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의 신청에 의해 교부하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함)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이하 사본이라 함)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김홍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및 소득세·재산세납부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실적증명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후보자 간에 근거없는 상호 비방이 남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이종걸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거대한 조직을 가동시켜 돈을 많이 쓰는 선거가 아니라 후보자의 국정운영전략과 정책추진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거비용에 대한 부

담없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선거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선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부패에 찌든 우리의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개혁이 “국민참여선거”, “정책선거”, “미디어선거”, “인터넷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선거개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가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견·정책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도 국가의 부담으로 정당·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중심의 선거가 구현되도록 하며,

셋째, 조직이용과 집회중심의 선거운동방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여 선거에 돈이 많이 드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넷째,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도 카드·계좌입금을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하며,

다섯째, 인터넷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수의 인터넷 사용인구를 선거참여로 유인함과 동시에 저비용 선거문화 풍토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선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고비용 선거를 일소하고, “돈 안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이강래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선거

의 과열과 막대한 정치자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적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지 않은데다가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정치적 신인들의 등장을 수월하게 하여 정치인들의 경쟁을 유발하여 정책대결로 유도하게 될 것이므로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네티즌들의 요구를 현행 공선법이 수용하지 못한 채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후보자 스스로도 각종 단체들과의 접촉·토론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청취하여 자신의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정범구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동원 선거, 지역·연고 중심의 선택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선진적 선거문화 구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TV 토론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심재권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언론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인 19세에 달한 국민들도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민법개정안에서도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고 있는 바 선거권도 이에 맞추어 19세에 달한 자에게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권의 부여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심재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후보개인에 대한 선택으로 공직후보자로 선출되었음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에 당선된 뒤에 유권자 및 당원의 사전양해도 없이 공천을 한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등의 정당과 유권자의 선택에 반하는 행태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협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를 개정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공직후보자로 당선된 이후 공천을 한 정당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여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철새정치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조희욱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 거소투표자가 그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의 영향하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읍·면·동 외에 200인 이상의 선거인이 입소하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도 투표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투표구에는 거동할 수 없는 자의 투표편의와 투표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투표소를 두며, 거동할 수 없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이동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또는 기관의 확인 외에 구·시·읍·면장의 현지확인 또는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송석찬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원”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6 대 3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2003. 1. 30)을 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의 입법취지는 정당하지만, 첫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기에 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둘째 선전벽보나 선거공고 등 특정한 표방수단이나 방법에 한정하여 규제하지 않고 일체의 표방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화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후보자를 일일이 평가하기 힘든 4대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

지·추천 여부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기준임에도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넷째 동법 제84조 단서에서 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당표방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당원경력을 강조하는 것인지, 정당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한 것인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다섯째, 동법 제84조의 목적이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립에 있다면 기초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을 할 만한 본질적인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개정하여 기초의회의원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타 선거후보자와의 형평성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심재권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각종 보궐선거 등의 투표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이들 보궐선거 등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들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대의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 재·보궐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투표마감시간을 현행보다 3시간 연장하여 21:00까지로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일 직장인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궐선거 등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김용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증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은 매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구획정제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이주영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회의원 출마자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모든 정당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공직후보예정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함은 물론 정당정치 본질의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를 제거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전에 입후보하려는 정당 혹은 무소속 여부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내 입후보 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으로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선불복현상이 일반화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경선불복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 성숙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가치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약간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합헌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정병국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으로 선출되도록 하고 당내 공직후보자 추천이 실효성을 갖도록 공직후보자추천대회에서 탈락한 자는 공직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며, 정치 신인들의 정치 입문을 원활하게 하고 공직선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후보예정자가 선거준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심규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가벌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형량을 달리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형량은 다른 별칙규정과 비교하여 높으므로 이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권태망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그 직

을 그만두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사직과 복직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고, 어깨띠를 두를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그 밖의 표지물 중 1종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의원 전갑길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명함을 직접 주기 힘든 공직선거후보자를 위하여 명함을 대신 주는 대행자를 후보자가 지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후보자 선거운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법>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국회의원 김원웅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1인 또는 과두적 지배구조로 인해 입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가이익보다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법 제114조의2의 개정으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라는 규정이 자유투표 조항으로 삽입된 바 있으나 개정 전의 기존 국회법에도 표결권 보장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국회법상의 자유투표 보장조항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유투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정당의 내부 규율이므로 정당법에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미 성숙된 민

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구미 각국에서는 관습법 또는 신념조항, 양심조항을 법률이나 당규로 명시해 자유투표 시 당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없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정신을 살리고,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국회의원 심재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공직후보자는 정당의 선택으로 공직후보자가 되었음에도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유권자 및 당원의 사전양해도 없이 공천을 한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등의 행각으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공직자로 당선된 이후 공천을 한 정당을 이탈하는 경우에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국회의원 정병국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정치의 발전 및 사당화된 정당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당의 지구당은 민주적 운영위원회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고, 지구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지구당 대표의 직을 그만둔 때로부터 5년간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도록 하고, 다만,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길 원하는 지구당 대표자는 선거일 6월 전에 사퇴하도록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국회의원 정장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에 중앙당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둠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법>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박승국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에 대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 뒤 나머지 50%는 정당 의석비율과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비율 등에 따라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교섭단체위주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50%는 이를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를 얻은 정당에 한하여 그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국회 의석수 등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이해봉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하고, 법인세 납부세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은 임의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

지부에 두던 후원회를 폐지하고,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을 수입 또는 지출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서만 수입 또는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 보조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그 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그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정책개발비 및 지구당의 지원비와 선거관계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정장선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후보자 및 정당 대통령후보 경선자도 후원회를 두어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후보자 등이 원활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40 이상은 정책개발비로, 100분의 40은 지구당의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정당이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당의 예산확정 및 결산은 정당의 예산·결산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와 의원총회에 대한 보고를 거치고, 그 결산내역 등은 정당의 기관지에 게재하며,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는 이르 3개월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정치자금의 수수(收受)와 관련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신기남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박승국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치가 국민들로 크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집회는 정치인들의 순수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집회라기 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세 과시용으로 변질된 경우도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인들의 [일단 보내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후원회 초청장 발송은 순수한 정치자금 모금의 성격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 또는 국정감사 등 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집회가 집중됨으로써 빚어지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곁핥기시 논의를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일환으로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을 폐지하고 대신 우편, 통신,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提案說明

국회의원 정병국

존경하는 목요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공식선거후보자 추천이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대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당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보조금의 일정한 비율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지구당에 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9월9일자 회부됨

○出席委員(13人)

金 聖 順 金 容 均 金 龍 學 金 宅 起
 金 學 元 睦 堯 相 安 商 守 李 揆 澤
 全 甲 吉 全 在 姬 鄭 義 和 千 正 培
 咸 承 熙

○請暇委員(1人)

朴 柱 宣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李 昌 熙
 전 문 위 원 安 秉 玉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政治改革特別	趙培淑		새천년민주당
		鄭範九	새천년민주당
		金聖順	새천년민주당
		咸承熙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국민참여통합 신당주비위원회
	宋永吉		국민참여통합 신당주비위원회

(9월26일자)

○請願回附

정당법개정의견에관한청원

(2003년9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외 1인으로부터 이강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9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외 1인으로부터 이강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3년9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외 1인으로부터 이강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